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 윤리에 대한 고찰

고향자(高香子)* · 김소라(金素羅)**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상담자들에게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주제와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의 개념을 알아보고, 각각의 윤리원칙과 대표적 상담학회들에서 제시하는 윤리지침을 살펴본 다음,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 및 다중관계 윤리 실재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수준 높은 윤리의식과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수조건이며, 윤리적인 집단상담 진행을 위해 지도자는 초기 면접에서부터 집단상담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에게 비밀을 보장,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명심시켜야 하며, 특히 경계가 불분명한 우리 문화의 특성이 집단상담에서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집단상담자에게 요구된다. 또한 체계적인 집단상담자 훈련 과정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 주요어 : 집단상담, 상담윤리, 비밀보장, 다중관계, 이중관계

* 숙명여자대학교

** 한국청소년상담원

I. 서론

집단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상담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개발되어 왔다(김형태, 2001). 집단상담은 중독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는 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Roback et al., 1996).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집단상담에서의 윤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학교 장면에 상담교사가 정식으로 임용되는 등 상담서비스 수혜자들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만큼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상담기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담자의 건강한 윤리의식과 윤리적 책무의 이행이다.

집단상담에서의 윤리는 집단상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해 개인상담과 차이가 있다(Welfel, 2006). 개인상담과 달리 집단상담에서는 자기개방이 상담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집단지도자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아닌 다른 참여자들과도 공유하도록 권유받는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집단을 신뢰하며 사적인 정보를 기꺼이 개방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공유되어진 사적인 정보에 대해 집단지도자는 비밀보장을 준수할 책임이 있지만, 집단참여자의 비밀보장준수는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은 개인상담에서보다 더 복잡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집단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참여자들의 반응을 모두 다 예측할 수 없고,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단상담전문가는 상담 중 혹은 상담과 상담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제력을 가진다. 이러한 상담자의 낮은 통제력은 참여자들 간에 의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 상담시간 외에도 참여자들 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만들며, 이것은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어 전문적 관계에 기초하여 참여자들의 성장을 도와주고자하는 집단상담 본래의 목표와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상담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의 윤리적인 측면들은 최근 집단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담현장에서는 상담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단상담이 이루어지는 장면 자체에 이미 여러 사회적 관계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상담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설상담소, 청소년 상담기관, 그리고 학교 등에서 집단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전문가에 의해 개인상담기

관에서 집단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참가대상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상담수련생들이 참가자의 다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대학이나 상담기관에서는 수련 중인 인턴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훈련의 일부로 집단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집단지도자가 슈퍼바이저이면서, 동시에 이후 취업 등과 관련하여 추천인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는 상황을 낳기도 한다. 전문가 훈련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적인 접근의 불가피성은 수련과 치료의 경계, 역할들의 혼란, 그리고 이후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까지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APA, 2001). 학교의 경우 집단상담 수업에서 집단상담을 실제로 실시하는 경우, 평가자이면서, 집단의 지도자이기도 한 교수/교사와의 다중관계가 형성되며, 집단상담의 지도자로서 각 개인을 이해한 후에는, 교수/교사가 평가자로서 공정한 역할을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상담의 경우에는 집단지도자와 관리자 및 다른 교사, 그리고 참여 학생들과 비참여 학생들 간에 비밀보장의 중요성 인지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비밀보장준수가 어려운 현실이다. 기업체 내에서도 상사/혹은 부하직원과 함께 참여하는 집단에서의 자기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 다루어진 갈등의 대상이 다른 참여자와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중관계는 비밀보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이 두 가지 문제는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도자와 참여자가 같은 학회, 같은 학교, 같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좁은 사회의 특성과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공과 사,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기 어려운 정(情)을 기초로 하는 문화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최상진, 2000), 집단에서 공유된 정보를 집단 밖의 정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노출할 가능성과 집단원끼리 집단 외 장면에서 만나 사회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단상담자는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와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들에 좀 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집단상담지도자는 참여자들이 집단에서의 신뢰로운 관계의 확립과 자기개방을 통하여 변화와 성장의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해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윤리와 관련된 갈등상황에 처할 경우 윤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상담에서의 윤리문제, 특히 집단의 특성 상 윤리적 갈등상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에게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주제와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따라 먼저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의 개념을 알아보고, 각각의 윤리원칙과 대

표적 상담학회들에서 제시하는 윤리지침을 살펴본 다음,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 및 다중관계 윤리 실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결론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II.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

모든 상담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비밀보장이다. 이론적인 배경이나, 상담의 기간, 방법과는 상관없이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밀보장은 상담의 기본이다. 이것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상담에서 신뢰를 쌓는 핵심이기 때문이다(Lasky & Riva, 2006).

비밀보장이란 내담자에 대한, 혹은 내담자에 의해 노출된 개인정보를 치료자가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Lasky & Riva, 2006). 또한 비밀보장은 그 누구와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전문가의 의무에 대한 전문가 행동의 일반기준이라 할 수 있다(Koocher & Keith-Spiegel, 1998). 이러한 비밀보장의 중요성에 기초가 되는 원칙들은 자율성(autonomy)과 약속 엄수(fidelity)라는 도덕적 원칙, 그리고 선행(beneficence)과 무해(nonmaleficence)의 윤리원칙이다(Welfel, 2006). 자율성이란 개인의 가치에 기초한 신념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의 선택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강요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Beauchamp & Childress, 2001; Welfel, 2006에서 재인용). 따라서 비밀보장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담자의 능력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약속엄수란 상담자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약속을 할 때의 신뢰와 정직성을 표현하는 것이다(Kitchener, 2000).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가 말한 정보들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동시에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전에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asky & Riva, 2006).

선행과 무해의 원칙 또한 비밀보장과 관련이 있다. 상담 상황에서 내담자가 이야기한 정보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사생활로 유지되어야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 비밀보장이 깨어지는 경우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비밀보장이 깨어진다는 것은 내담자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과 함께 비밀보장에 대한 미국상담학회(ACA)와 미국심리학회(APA)의 윤리규정을 살펴보면 두 학회의 윤리규정은 모두 다 비밀보장을 폭넓게 다루며, 비밀보장이 전문가로서의 행동에 토대가 됨을 강조하며 동시에 비밀보장준수의 한계를 내담자에게 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미국상담학회의 윤리규정에서는 ‘Section B: 사생활 및 비밀보장 준수와 예외’에서 상담자들은 신뢰가 상담관계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함을 인지하고 사회/문화적인 상식선에서 비밀 보장 준수와 한계를 전달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상담자들은 비밀보장 원칙의 한계 및 비밀보장 원칙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내담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ACA, 2005).

미국심리학회의 윤리규정 ‘4. 사생활과 비밀보장’에서도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함과 동시에 비밀보장의 범위와 한계가 법에 의해 조절될 수 있으며 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직업적 관계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전문적 관계를 가지게 된 개인 및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APA, 2002).

우리나라의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윤리규정에서도 비밀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생활과 비밀보호의 중요성 모두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하는 상담자의 의무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05; 한국상담학회, 2007). 그리고 두 학회의 윤리규정 모두 비밀보호의 한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국상담학회에서는 비밀보호의 한계를 상담수혜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상담수혜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등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에서는 7가지의 예외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상담학회에서 제시하는 3가지 경우 외에 법원의 요구라 할지라도 내담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경우 요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사적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밝힐 것, 내담자의 상담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경우 팀의 존재를 알릴 것, 내담자에게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리고 이에 대해 인식시킬 것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비밀보장에 대한 이러한 윤리강령들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밀보장을 절대적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모든 윤리강령은 그 한계/예외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Welfel(2006)은 이러한 비밀보장의 예외로, 정보 공개에 대한 내담자의 요구, 비밀정보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정신건강 전문가에 대한 내담자의 항의와 고소, 다른 내담자의 소송, 주와 연방 법률에 의거한 한계, 위험한 내담자의 경고와 방어에 대한 의무, 미래 범죄를 계획하는 내담

자, 전염성이 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내담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내담자 상담 등의 9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비밀보장과 예외에 대한 윤리규정은 상담자가 직면하게 되는 각각의 특별한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것에 기초해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담자들의 상담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자들은 윤리규정 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Brabender, 2006). 우리나라 상담계의 대표 학회 두 곳에서의 윤리규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ACA, APA의 윤리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언급하고자 한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비밀보장의 한계 상황에 대한 측면은 ACA와 APA에서 일반적인 것에 기초해 작성한 한계 상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상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규정의 비밀보장 한계 상황들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든다. 좀 더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현실성이 있으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윤리지침을 위해 실제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윤리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상담에서 상담자들은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자주 겪는다. Pope와 Vetter(1992)가 APA 회원 천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담자들이 다섯 번째로 자주 겪는 딜레마가 비밀보장의 문제로 나타났다.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은 더 복잡하다(Brabender, 2006). 상담의 효과성이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존성과 상호작용에 기초하는 집단상담에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당연히 노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준수의 책임을 지도자에게는 요구하지만, 구성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Rapin, 2004; Lasky & Riva, 2006에서 재인용). 미국의 집단활동 전문가학회(Association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ASGW)에서는 집단상담 및 치료에 있어서 집단이라는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집단상담 및 치료활동의 실제에 관한 윤리규준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이형득 등, 2002). 그러나 현재 집단활동 전문가학회(ASGW)는 미국 상담학회(ACA)의 분과학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상담학회의 윤리규준을 따르고 있다. 그 대신 Rapin과 Keel(1998)이 마련한 ASGW Best Practice Guidelines를 집단상담전문가를 위한 고유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이형득 등, 2002), 이 지침은 이후 2007년에 재수정되었다.

미국상담학회(ACA) 윤리규정에서는 집단상담에서 내담자를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외상에서 보호하기 위한 예방수단을 준비해야 하며(A.8.b), 특정 집단에 가입된 사람들의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B.4.a). 그리고 미국심리학회(APA)의 윤리규정에서는 10.03에서 집단상황에서 상담을 제공할 때는 처음부터 모든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활동 전문가학회(ASGW)

윤리규정에서는 집단상담자가 비밀보장과 그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모든 집단구성원들에게 비밀보장의 필요성과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잠재적인 결과, 그리고 집단에서의 논의가 법적으로 특권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사전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A.7.d).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에서는 집단상담에 대한 윤리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고, 분과학회인 집단상담학회에서도 윤리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에는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상담심리사는 비밀보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집단에서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어려움을 토론했고 동시에 집단구성원들에게 비밀보호가 완벽하게는 보장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집단상담과 관련된 윤리규정들은 모두 집단의 특성 상 비밀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집단지도자가 비밀보장의 중요성 및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집단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 지도자는 비밀보장을 포함하여 집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적절한 상황들로부터 집단구성원들을 보호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집단구성원들과 이의를 해야만 한다(Pepper, 2004). 또한 집단상담이 심도 있게 진행될수록, 구성원들은 자기노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집단지도자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많은 정보들이 주는 혼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단상담에서는 집단구성원이 부주의하게 비밀을 드러낼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항상 상기시켜야 한다. 그러나 집단치료의 비밀보장에 대한 연구는 경험이 많고 숙련된 치료자들이 오히려 집단에서의 비밀보장 한계에 대하여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Roback et al., 1996). 그들은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하게 되면 집단의 집단 참여율이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비밀보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윤리지침을 따르기보다는 상담자의 건강한 윤리의식과 윤리결정과정을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Welfel, 200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상담가들이 집단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은 비밀보장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집단원에게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하여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비밀파기와 관련하여 내담자들이 경험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가 어렵다.

집단구성원이 서로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개입하는 것은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 집단에서 비밀이 보장될 때 구성원들은 가장 중요한 자기결정권의 한 형태로서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집단지도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강조는 무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Brabender, 2006). 이렇듯 집단이라는 특성 상, 그리고 집단상담이 진행될수록 비밀을 지켜야 할 내용들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구성원들이 자신이 다루어야 할

정보들 간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비밀보장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비밀보장의 문제는 집단구성원들 간에 다중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집단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더욱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Lasky & Riva, 2006).

III. 다중관계와 관련된 윤리

다중관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Pope(1991)는 상담자가 자신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다른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Crag(1991)는 상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담의 목적과 경계를 주도하는 모호한 관계라고 정의하였고, Kagle와 Giebelhausen(1994)은 전문가와 내담자 사이의 전문적 경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표현하였다. Corey 등(1993)은 상담자가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담자와 한 가지 이상의 역할에 관여하여 전문적인 관계를 손상시킬 때 이중관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중관계 또는 다중관계는 전문적 관계를 손상시켜 상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면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관계(현재는 다중관계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80년대 초반에는 주로 내담자와의 성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러한 내담자와의 성적인 관계는 비윤리적이라는 합의된 의견이 현재까지도 지배적이다. 다중관계와 관련된 미국상담학회(ACA)와 미국심리학회(APA)의 윤리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CA에서는 윤리규정 'A.5. 내담자와의 관계 및 상담가의 역할'에서 다중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상담자는 현재의 내담자뿐만 아니라(A.5.a), 과거의 내담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애인, 또는 내담자의 가족 구성원과의 성적, 이성적인 접촉/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내담자와는 전문적 상담 관계 종결 이후 5년 동안 성적이거나 이성적인 접촉/관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관계에서 착취적인 부분이나 내담자에게 피해가 될 만한 소지가 없는지 문서를 통해 사전 심의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A.5.b). 이와 같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성적관계가 1995년의 윤리규정에서는 상담종결 후 2년이었던 것이 2005년 개정된 ACA윤리규정에서는 5년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05년에 개정된 ACA 윤리규정은 상담자-내담자 간의 모든 비전문적 관계를 해로운 것으로 간주했던 이전의 윤리규정과 많은 면에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모든 유형의 "이중관계"를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면서, 내담자와의 비전문적인 모든 유형의 관계를 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ACA, 1995).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는 규정 A.5.d에서, 과거 혹은 현재 내담자와 비전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자는 그들과 접촉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사례를 문서로 작성하고, 이 관계의 정당성, 잠재적 이익, 그리고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기록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모두 과거 혹은 현재 내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도하지 않게 해를 끼칠 경우 상담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ACA 윤리규정에서는 주의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전문상담관계를 넘어서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잠재적으로 이로운 상호작용도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잠재적으로 이로운 관계와 요인들에 대해 더 탐색되고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Glossoff와 Kocet, 2006).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에서는 이중관계, 성적관계,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내담자를 착취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이중관계, 사적 관계 및 성적 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05).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규정에는 “상담자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관계와 성적관계를 피해야 한다. 특히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최소 2년 내에는 상담수혜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2007). 따라서 ACA와 APA는 성적 이중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성적인 관계 이외의 다중관계에 대해서는 유익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상정하면서 그 사회의 상식과 문화를 고려하여 상담자에게 좀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윤리규정들은 너무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어 우리 문화와 상황에 적합하고 적용가능한 지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정을 중시하여 공사(公私)의 경계가 어려운 우리 문화에서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중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중관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내담자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다중관계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 개인의 이익 추구, 정서적·의존적 욕구, 이타적인 행동, 예기치 못한 상황 등의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Reamer, 2003). 친밀한 관계란 성적인 관계, 신체적 접촉, 과거 연인에게 제공하는 상담, 친밀한 행동 등이 포함되며, 개인의 이익에는 금전적인 이익,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유용한 정보도 포함된다. 정서적·의존적 욕구란 내담자와의 확장된 관계, 내담자의 의존성 증가, 개인적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에 대한 혼동, 내담자와 뒤바뀐 역할들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타적인 행동에는 부탁을 들어주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선물을 주거나 특별한 시간을 내는 등의 행동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행사나 회원 가입, 지인이나 친구로서의 관계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포함된다. 즉, 전문적 관계를 넘어서 그 외

사회적 관계를 맺을 경우 상담자-내담자 간의 전문적 관계는 위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묶이는 여러 상황들에 의해 손상되며, 한번 손상된 전문적 관계는 재성립이 어렵다. 이는 상담자가 지켜야 할 무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내담자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힘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상담자와의 다중관계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다수의 내담자로 구성된 집단상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집단상담자는 다중관계가 갖고 올 유익성과 해로움에 좀 더 윤리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집단상담에서의 다중관계와 관련된 윤리규정들을 살펴보면, ACA 윤리규정 C.6.d와 APA 윤리규정 3.08과 7.05는 훈련 과정에서의 다중관계가 야기할 수 있는 착취적 성격과 관련하여 상담자/심리학자는 전문적 관계에서 내담자/환자, 학생, 연구참가자, 고용인과 같은 전문적 관계에서 타인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ACA, 2005; APA, 2002). 특히 APA에서는 개인치료 또는 집단치료가 훈련프로그램이나 과정에서 요구될 때 심리학자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상담자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그런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심리학자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학생과 슈퍼바이저를 평가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집단활동 전문가협회(ASGW)에서는 1989년 '집단상담자를 위한 윤리지침'에서 '집단상담자는 집단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집단원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객관성과 직업적 판단을 해칠 수 있는 집단원과의 이중관계를 피한다'라고 하면서 8가지의 지침을 제시하며 이중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김명권 등 역, 2001).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상담기관 운영자가 전문적 관계에서 교육, 감독하거나 평가할 때 착취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다중관계가 형성될 상황에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고, 내담자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상담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상담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소 모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하여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유익함이 많다면 다중관계가 가능함을 내포하고 있다.

집단상담에서 다중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대다수의 전통적인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는 전문가 또는 슈퍼바이저 교육을 위해 박사과정생들이 석사과정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집단을 운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Corey, 2000; Forester-Miller & Duncan, 1990; Furr & Barret, 2000; Pierce & Baldwin, 1990; Davenport, 200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전문가 훈련과정에 집단상담 참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격제도에서도 집단상담 참가 또는 운영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집단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다중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담자 훈련과정에서 교육생들은 교수가 운영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거나 또는 동료와 함께 소집단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윤리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학생들은 집단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할 교수와의 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일 지도 모르며, 구성원 간에는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될 지도 모르며, 집단 밖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서로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렇듯 경험적인 접근을 사용하여 집단상담자를 훈련함에 있어서 다중관계는 그 자체가 가져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비밀보장의 문제도 동시에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단지도자와 집단구성원의 사회적, 개인적, 사업적 혹은 다른 형태의 다중관계는 집단지도자의 전문적인 판단과 목표를 흐릴 수 있으며, 집단에 대한 집단구성원의 감정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집단 내 다른 구성원이 한 구성원과 지도자 간의 복합관계를 눈치 채면 집단의 응집성은 줄어든다. 이러한 관계는 지도자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구성원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상담에서의 다중관계의 문제는 우리 문화에서 좀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어 집단상담전문가의 윤리적 민감성이 요구된다. 우리 문화의 특성으로 볼 때 '우리' 집단에 속하는 경우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정'이다(최상진 등, 1990). 정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공과 사,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기 어려우며, 이렇게 되면 객관성, 합리성과 공정성, 냉정성, 판단을 상실하기 쉬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개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상진, 2000). 집단상담은 유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공감하는 과정으로 이는 정드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집단상담은 전문적인 관계인 동시에 '인간적인 관계'가 되어 전문적인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인간적인 관계로 계속 남아 다중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공과 사의 경계가 허물어진 다중관계는 비밀보장을 과기할 가능성 또한 크게 만든다. 특히 집단지도자에게까지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집단구성원은 전문적인 관계가 종결된 후에도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을 계속 기대하게 되고 상담자에게 의지하게 되며,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집단지도자는 의도하지 않게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경계의 과기로 인한 혼란은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 내담자에게 더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다.

이와 더불어 훈련 상황에서 비밀보장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수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 Dulchin과 Siegal(1982)은 학회 내 훈련과정에서의 치료 전문가 평가과정을 관측하여 슈퍼바이저 모임의 평가과정에서 비밀보장이 깨지는 미묘한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중관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학회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슈퍼비전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이 상담자는 다른 상담자의 슈퍼바이저를 상담할 수 있다고 허가되었기 때문에

후에 모든 상담자들이 슈퍼바이저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 결과 치료와 슈퍼비전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비밀보장이 깨질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슈퍼비전과 치료를 분리함으로써 비밀보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학회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슈퍼바이저들은 이 모임에서 자신들의 내담자에 대한 느낌과 판단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사교환이 비언어적이고, 무의식적이었다 하더라도 학회 내 내담자/슈퍼바이저의 위치를 만들고 있었다. 비밀보장은 깨졌고, 상담에서의 성실성은 훼손되었다.

Goffman(1961)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분석집단에서도 치료자/집단지도자들 사이에서 유사한 현상이 진행됨을 발견하였고, Slater(1977)는 사회 구조 내에 근본적으로 모순된 요구가 있음을 관찰하였다(Pepper, 2004에서 재인용). 집단상담훈련 학회 안에서 명확한 경계를 위해 필요했던 치료와 훈련의 구분은 각자의 역할에 대한 유연한 경계와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 안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인턴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교수가 진행하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집단원들이 집단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시작한다면 그 집단은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Corey, 2000), 집단지도자가 내담자와 치료적 역할 외의 다른 역할관계를 갖는 것은 그 내담자가 후에 상담자를 다시 찾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보인다(Pope & Vasquez, 2001).

IV. 비밀보장과 다중관계 윤리의 적용과 실제

앞에서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대한 윤리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이 윤리와 관련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집단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비밀보장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몇몇 논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완벽한 비밀보장을 기대하는 반면,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의 한계가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yer와 Smith(1977)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에 참여한 대학생의 88%가 집단지도자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1%는 구성원들 또한 비밀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구성원들이 집단지도자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설명을 실제로 얼마나 이해

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연구에서 구성원들은 비밀보장에 대한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Davis, 1980). 집단지도자가 분명히 모든 정보는 집단 내에서만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었다. 또한 12명의 집단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8명은 집단 내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이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고(Davis, 1980), 315명의 집단지도자 중 34%가 집단구성원이 비밀보장을 어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Lasky, 2005). 이와 같이 집단초기에 비밀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집단지도자가 설명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집단상담이 종결된 후 비밀보장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담자들이 집단을 신뢰하거나 혹은 다시 집단상담을 찾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비밀보장/유지가 어려운 이유들을 Pepper(2004)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수다(gossiping)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문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는 안도감을 얻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집단구성원들은 집단에서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집단회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나 감정에 대해 집단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 구별하는 경향이다. 결국 이러한 치료에 대한 노출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집단 경험의 강도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면서 집단 내에서의 경계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집단상담지도자는 이러한 위반 사례가 이해의 부족, 경계의 어려움, 또는 고의적인 행동 때문에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집단지도자들도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Roback 등(1992)의 연구에 따르면 (a) 100명의 APA 회원들 중 86%가 비밀보장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고; (b) 74%가 비밀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c) 68%가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집단구성원의 비밀을 노출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구분하고 있었으며; (d) 절반 이상 정도가 비밀보장이 깨어졌을 때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e) 47%만이 집단을 떠난 이후에도 비밀보장을 지켜야 함을 설명하였고; (f) 33%는 비밀보장이 깨어졌을 때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g) 32%만이 비밀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한계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설명한다고 나타났다. 즉, 지도자의 3분의 1만이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56%가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항상 검토한다'고 응답하였다(Lasky, 2005). 이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비밀보장이 깨어졌을

때의 구체적인 결과나 비밀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집단지도자에게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자기노출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는 집단지도자들도 있다(Lasky, 2005). 이들 연구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해 집단지도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구성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집단지도자에 의해서도 비밀보장이 깨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전문적인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 자문이나 공동 치료, 교육적인 목적으로 예를 제공하고자 할 때의 세 가지로 대표해 볼 수 있다(Lasky, 2005).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Welfel(2006)은 가장 좋은 기준으로 '내담자가 이곳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까지 노출할 수 있을지 결정하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점은 상담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밀보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인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상담에서도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다중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상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 집단상담의 경우 다중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내담자와 이중관계를 가지면 상담자는 치료자로서의 객관적 시각을 잃기 쉽고 전문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는 가능한 한 이중관계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방기연, 2004). 그러나 입원치료에서의 집단이나, 작은 마을에서의 집단상담, 그리고 많은 집단상담훈련기관 내에 이중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Pepper, 2007). Slater(1977)는 다중관계와 관련하여 사회 구조 내 모순된 욕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Pepper,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다중관계는 비밀보장을 침해하기 때문에 분명 비윤리적이거나, 많은 집단상담훈련기관에서 이러한 이중관계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Pepper, 2007). AGPA(2007)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집단상담은 그 상황이 주는 특수성 때문에 치료자가 동료이거나 슈퍼바이저일 경우도 있고, 집단구성원이나 지도자가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만날 수도 있으며,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다양한 역할이 존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집단에서의 이중관계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점이다(Pepper, 2006). Fisher(2003)는 한 내담자에게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집단을 지도할 때 상담자는 개인상담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에 주의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집단지도자는 이중관계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Herlihy & Watson, 2003).

개인상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다중관계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지만, 집단상담에서의 다중관계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개인상담에서 다중

관계의 효과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을 보면 상담자-내담자 간의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내담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집단상담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관계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집단지도자는 집단상담에서의 의미 있는 인간관계형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단밖에 그것을 확장시키도록 참여자들을 도와주어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Yalom, 1995).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단상담자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우정에 대한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집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치료적 집단의 경우 집단 밖에서 치료자가 내담자와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생산적이다(Gladding, 1995).

V.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의 효과적 대응방안

비밀보장은 내담자의 자율성과 약속 엄수에 대한 권리, 그리고 치료자의 선행과 무해의 의무라는 윤리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일대 일 상황에서 비밀을 보장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집단상담에서는 비밀보장이 더 복잡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에서의 자기-노출은 치료의 핵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집단상담을 위해서 지도자는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집단지도자는 집단구성원의 비밀을 지키도록 요구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집단에서 드러난 것이면 무엇이건 간에 비밀을 보장, 유지할 필요를 각 구성원들에게 명심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초기 면접에서부터 집단상담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집단행동의 주요문제 중 하나인 비밀보장은 지도자로부터 지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의를 통해 도달하는 것이 최선이다(Lakin, 1985; 이현림 등, 1998에서 재인용). 또한 집단상담에 참여하기 전부터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가 있고, 다시 초기 상담에서 전체적으로 집단에게 제시된다면, 구성원들이 비밀보장의 문제를 가볍게 다룰 기회는 적어질 것이다(이현림 등, 1998). 따라서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집단원 선별과정(screening)과 사전집단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선별과정은 내담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별과정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담자 편에서는 예비 집단원의 참여 동기, 참여의 자율성 여부, 참여목표 등을 확인하고, 참여자 편에서는 집단에 대한 정보와 집단상담자에 대한 신뢰감을 기초로 집단의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김명권 등, 2007). 사전집단 또한 예비집단원에게 집단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상담에 참여했

을 때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기꺼이 행할 용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사전집단 회기를 통하여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과 한계에 대하여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상담자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집단작업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중관계의 문제는 비밀보장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윤리규정이 모든 상황에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단지도자는 다중관계가 가져올 위험과 유익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집단상담가 수련과정에서 다중관계가 가져올 위험과 유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중관계의 위험성을 최대한 피하는 윤리적인 교육과정의 한 예로,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의 교과과정을 구분하여 석사 과정생들은 집중적인 치료가 아닌, 구조화된 또는 심리교육을 위한 집단에 참여해서 집단이 가진 힘과 기본적인 기술 사용방법을 알도록 도와주고, 박사과정생들은 보다 심도 있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집단 역동성의 이해, 어려운 집단구성원 다루기,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 실수에서 회복하는 방법들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Davenport, 2004). Biaggio, Paget와 Chenoweth(1997)는 훈련생과의 윤리적인 관계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교육기준 유지, 학생을 위해서 제공되는 교육 경험, 착취적 상담의 부재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학생들과 윤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수들이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교수들은 힘에서의 차이와 평가 관계, 그리고 이후에도 윤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분위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다중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전문가는 먼저 윤리적인 다중관계와 비윤리적인 다중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Reamer, 2003). 비윤리적인 다중관계는 상담자의 전문가적인 분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 상담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 상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내담자, 동료 혹은 제3자를 착취하고,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말한다(Corey & Herlihy, 1997; Reamer, 2003).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Reamer(2003)는 다음과 같이 다중관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상담자는 항상 내담자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둘째, 상담자는 다중관계의 윤리적인 문제에 처했을 때 내담자와 동료에게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리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상담자는 동료나 슈퍼바이저의 자문을 구하고 다중관계의 문제를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자료, 법규, 윤리규정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넷째, 상담자는 다중관계의 경계적인 문제를 표명하고 내담자와 동료, 그리고 제 3자에게 가능한 보호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다섯째, 다중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든 토론 내용, 조언, 슈퍼비전에 대한 자료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된 대상자들과 평가함으로써 실행계획 수립을 조정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다중관계의 상황에 처했을 때 Kitchener(1988)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길 제안한다. 첫째,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역할과 역할에 관련된 기대들 간의 잠재적인 갈등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역할들이 주는 이익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셋째, 다중관계의 해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들이 지닌 의무와 기대를 명백히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해로움을 가질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는 이 해로움들을 조정하고 수정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들의 근거에는 상담자가 다중관계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하며, 다중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각 영역별로 요약하고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상담관련학회의 윤리규정은 기본적으로 내담자 권리의 존중에서 출발하고 있다.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은 자율성(autonomy)과 약속 엄수(fidelity)라는 도덕적 원칙, 그리고 선행(beneficence)과 무해(nonmaleficence)의 윤리원칙에 기초한다. 그리하여 집단상황에서 상담을 제공할 때는 처음부터 모든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 비밀보장과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참여자들에게 비밀보장의 필요성과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지도자는 집단을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집단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점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차후 비밀보장이 준수되지 않아 내담자들이 해를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상담에서의 다중관계와 관련된 윤리규정들은 무해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훈련 과정에서의 다중관계가 야기할 수 있는 착취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자는 내담자/환자, 학생, 연구참가자, 고용인과 같은 전문적 관계에서 타인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집단치료가 상담자 수련 프로그램이나 과정에서 요구될 때 심리학자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상담자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그런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심리학자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학생과 슈퍼바이자를 평가해야 한다. 다중관계는 비밀보장을 침해

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집단지도자가 내담자 또는 수련생과 다중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다중관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단상담전문가 훈련과정에서 수련생이 상담자를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단지도자는 슈퍼바이저, 교수, 관리자, 선후배 등 다양한 관계에 놓여질 때,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과 그 역할들이 주는 이익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Kitchener, 1988).

셋째,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수준 높은 윤리의식과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집단상담자 훈련과정의 중요성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001년 미국심리학회에서는 집단상담의 훈련과정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집단보다는 개인과 가족상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단상담은 그 가치에 비해 훈련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다(APA, 2001). 현재까지의 집단상담전문가 훈련에서 집단상담의 운영 및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윤리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과 같은 상담전문가 훈련과정은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담전문가를 양성함에 있어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상담전문가 훈련과정의 변화와 적절한 지침은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윤리교육에 대한 훌륭한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수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다면 학생들은 교육에서 말하는 분명한 윤리가 아닌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윤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Kitchener, 1992).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상담훈련은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반해 집단상담자훈련은 체계적인 과정이 아직 미흡하다. 집단상담훈련과정은 이론과 경험이 통합된 학습, 지식과 기술의 활용, 그리고 자기-자각의 적절한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APA, 2001). 따라서 먼저 기본적인 이론 수업이 선행된 후, 학생들은 보조진행자로서의 기술을 발달시키고, 이 과정을 '반영팀(reflecting team)'이 관찰한 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동료 간의 슈퍼비전(peer supervision)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자발적인 집단의 보조진행자 역할을 학생들이 교대로 경험하며, 이 과정에 대한 슈퍼비전을 진행하도록 하고 참여자로서의 경험은 배제시킨다(APA, 2001). 이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면 윤리적 집단상담자 훈련과정을 통해 체험적으로 윤리를 학습함과 동시에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다중관계에 빠지기 쉬운 우리 문화적 특성을 인식하고 자신도 모르게 집단원들과 다중관계를 가짐으로써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점검해보는 윤리적 민감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집단상담과정중에 집단지도자와 집단원간의 술자리 모임이나 집단이 종결된 후에 집단지도자와 몇몇 집단원과의 사교적인 만남 등은 그동안 종종 있어왔는데 이와 같은

만남 자체가 다중관계임을 인식하고 이 관계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해에 대하여 점검하여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자는 집단상담에서 비밀보장과 다중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중관계는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다중관계는 비밀보장의 침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에 다중 관계가 대부분의 집단지도자 훈련 기관의 사회적 구조 내 한 부분이라면, 내담자/수련생의 비밀보장 침해 또한 사회적 구조 중 일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학원 교육과정에 집단상담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 집단지도자와 집단구성원 간의 다중관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윤리를 위반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상담이 시작되기 이전에 참여자 선발과정에서부터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 대상 사전집단을 실시하여 집단지도자 뿐만 아니라 집단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칙과 도덕성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는 과정은 집단상담 참여자들의 책임감과 응집력을 강화하게 하여 서로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문헌을 중심으로 집단상담의 실제에 있어서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 첫째, 이 연구는 상담자들에게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주제와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와 관련한 우리나라 집단상담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존 연구를 발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집단상담자들과 집단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와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여 양적, 질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들은 보고된 것이 있지만 우리 문화의 특성과 관련하여 집단상담자와 참여자들은 비밀보장과 다중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는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밝히는 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다. 셋째, 집단상담자와 참여자들은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대하여 각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결과의 자료들은 집단상담자교육과 집단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경험적 연구들을 기초로 문화적 차이와 실제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들을 고려한 윤리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명권, 김창대, 박애선, 전종국, 천성문 공역 (2007). 집단상담 과정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형태 (2001).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방기연 (2004). 집단상담에서의 상담 윤리강령. 연세교육연구, 17(1), 99-111.
- 이현림, 김영숙 (1998). 집단상담의 윤리 문제에 대한 고찰. 새마을·지역개발연구, 22, 21-43.
- 이형득, 김성희, 설기문, 김창대, 김정희 공저 (2002). 집단상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 최상진, 박수현 (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69-78.
- 최해림 (2002).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05-828.
- 한국상담심리학회 (2005).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http://www.krcpa.or.kr/intro/intro05_01.php
- 한국상담학회 (2007). 윤리규정. <http://counselors.or.kr:8080/index.html> 2007년 8월 10일 인출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1995). *ACA Code of Ethics & Standards of Practice*.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2005). *ACA Code of Ethics*.
- American Group Psychotherapy Association[AGPA]. (2007). *ASGW Best Practice Guidelines*. http://www.asgw.org/PDF/Best_Practices.pdf
- American Group Psychotherapy Association[AGPA]. (2007). *Practice guidelines for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Author.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2001). *Group Therapy Training*. <http://www.group-psychotherapy.com/articles/apa2001.ppt>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2).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 Brabender, V. (2006). The ethical group psychotherapist.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6(4), 395-414.
- Biaggio, M., Paget, T. L., & Chenoweth, M. S. (1997). A model for ethical management of faculty-student dual relationship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8, 184-189.
- Corey, G. (2000).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5th ed.).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 Corey, G., Corey, M. S., & Callahan, P. (1993).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Corey, G., & Herlihy, B. (1997). Dual/multiple relationships: toward a consensus of thinking. In Hatherleigh Editorial Board (Ed.), *The Hatherleigh guide to ethics in therapy* (pp. 183-194). New York: Hatherleigh Press.
- Davenport, D. S. (2004). Ethical issues in the teaching of group counseling.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29(1), 43-49.
- Davis, K. L. (1980). Is confidentiality in group counseling realistic?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8, 197-201.
- Dulchin, J., & Siegal, A. (1982). The ambiguity of confidentiality in a psychoanalytic institute. *Psychiatry*, 45, 27-37.
- Fisher, C. (2003). *Decoding the ethics code: a practical guide for psychologist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Forester-Miller, H., & Duncan, J. (1990). The ethics of dual relationships in the training of group counselors.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15, 83-93.
- Furr, S., & Barret, B. (2000). Teaching group counseling skills: problems and solution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 94-104.
- Gladding, S. T. (1995). *Group Work: A Counseling Specialty*(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 Glosoff, H. L., & Kocet, M. M. (2006). Highlights of the 2005 ACA. code of ethics. In G. R. Walz, J. C. Bleuer, & R. K. Yep (Eds.), *Vistas: Compelling perspectives on counseling, 2006* (pp. 5 - 10).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Herlihy, B., & Watson, Z. E. (2003). Ethical issues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in counseling. In F. D. Harper and J. McFadden(Eds.), *Culture and counseling: New approaches* (pp. 363-378).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Kagle, J. D. & Giebelhausen, P. N. (1994). Dual relationships and professional boundaries. *Social Worker*, 39(2). 213-220.
- Kitchener, K. S. (1988). Dual role relationship: what makes them so problematic?.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4), 217-221.
- Kitchener, K. S. (1992). Psychologist as teacher and mentor: affirming ethical values throughout the curriculum.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3,

190-195.

- Kitchener, K. S. (2000). *Foundations of ethical practice, research, and teaching in psychology*. Mahwah, NJ: Lawrence Erlbaum.
- Koocher, G. P., & Keith-Spiegel, P. (1998). *Ethics in psychology: Professional standards and cas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kin, M. (1985). *The helping group: Therapeutic principles and issues*. Reading, MA: Addison-Wesley.
- Lasky, G. B. (2005). *Confidentiality in groups: Rate of violations, the consent process, and group leader level of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Colorado.
- Lasky, G. B. & Riva, M. T. (2006). Confidentiality and privileged communication on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6(4), 455-476.
- Meyer, R. G., & Smith, S. R. (1977). A crisis in group 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32, 638-643.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NASW]. (2000). *Code of ethic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Washington, DC: Author.
- Pepper, R. (1997). Treatment with unethical practitioners: Cavaet emptors.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27, 215-223.
- Pepper, R. (2004). Confidentiality and dual relationships in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4(1), 103-114.
- Pepper, R. (2007). Too close for comfort: the impact of dual relationships on group therapy and group therapy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7(1), 13-23.
- Pope, K.S. (1991). Dual relationships in psychotherapy. *Ethics and Behavior*, 1, 21-34.
- Pope, K. S., & Vasquez, M. J. T. (2001).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 practical guide for psychologists*(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Pope, K. S., & Vetter, V.A. (1992). Ethical dilemmas encountered by member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A national survey. *American Psychologist* 47, 397-411.
- Rapin, L. S. (2004). Guidelines for ethical and legal practice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group. In L.L. DeLucia-Waack, D.A. Gerrity, C.R. Kalodner, & M.T. Riva(Eds.), *Handbook of group counseling and psychotherapy*(pp.151-165). Thousand O만, CA:

Sage.

- Reamer, F. G. (2003). Boundary issues in social work: managing dual relationship. *Social Worker, 48*(1), 121-133.
- Roback, H. B., Moore, R. F., Bloch, F. S., & Shelton, M. (1996). Confidentiality in group psychotherapy: Empirical findings and the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46*, 117-135.
- Roback, H. B., Ochoa, E., Bloch, F., & Purdon, S. (1992). Guarding confidentiality in clinical group: the therapist's dilemma.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42*, 81-103.
- Welfel, E. R. (2006). *Ethics in counseling & psychotherapy*(3rd ed.). Belmont: Thomson Learning.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4th ed.). New York: Basic Books.

* 논문접수 2007년 8월 11일 / 1차 심사 2007년 8월 30일 / 2차 심사 2007년 9월 30일 / 3차심사 2007년 12월 14일 / 4차심사 2008년 2월 28일 / 게재승인 2008년 3월 22일

* 고향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 상담 및 상담자교육(Counseling and Counselor education)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상담 및 생활지도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한국 대학생의 가치성향과 상담효과" 등이 있다.

* e-mail: hyangkoh@hanmail.net

* 김소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 및 교육심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동 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학과 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상담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legnasr@hanmail.net

Abstract

Confidentiality and Multiple Relationships of Group Counseling

Hyang-Ja Koh* · So-Ra Kim**

This study purposes to investigate confidentiality and ethical issues in regard to multiple relationship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confidentiality and multiple relationships of group counseling, this paper suggests how to effectively respond to ethical conflicts. According to the ACA Code of Ethics and many studies, not only a leader but also members of a counseling group should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each person. However,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observe confidentiality due to the unique nature of group counseling; thus the group leader should make group members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confidentiality and responsibilities to protect the individual right of privacy. For the multiple relationships, there is only a paucity of studies on the multiple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group counseling, although some researchers point out benefits of such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the individual counseling. In fact, the multipl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counseling can be beneficial in that it offers a meaningful relationship to a client. On the contrary, the multiple relationships of group counseling are not desirable because the purpose of the group counseling is to learn how to forge a relationship. In order to minimize ethical conflicts in conducting group counseling, a group leader is required (1) to help group members protect and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through the whole counseling sessions including a screening interview; (2) to clearly aware of boundaries of the multiple relationships based on appropriate ethical standards; and (3) to deal with ethical issues resulted from the multiple relationships in an effective manner. This paper thus demonstrates suggestions for group counselor training.

Key words: Group counseling, Counseling ethics, Confidentiality, Multiple relationships, Dual relationships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